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곽향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2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곽향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재진,
남궁역, 박성연, 송경택,
유만희, 이상욱, 이원형,
이효원, 이희원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에 추가된 개정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
- 이는, 현행 조례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, 정비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덮개·포장·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함(안 제3조제4호의2, 안 제3조제5호의2)
- 나.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(안 별표 1의 7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위반”을 “위반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위반”을 “위반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: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덮개·포장·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

5의2.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2: 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

별표 1의 6.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란 다음에 7.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(제3조제4의2호 및 제5의2호)	150,000	
---	----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4호의2·제5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서울특별시 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의 위반행위를 자치구나 수사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포상금 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범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(단, 행 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)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.	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: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 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 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 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	4. -----위반 1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신설>	4의2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: <u>법 제11조제20항(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덮개·포장·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</u>

5.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: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 <신 설> 6. ~ 9. (생략)	<u>운송사업자</u> 5. ----- 위반 1: ----- ----- ----- ----- 5의2.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2: <u>제12조제1항제8호(법 제33조에</u> <u>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<u>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</u> <u>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</u> <u>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</u> 6. ~ 9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
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(안 별표1의 7)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(교통실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화물 위법행위 관련 포상금	1,00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병준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5년 화물 위법행위 관련 포상금 사업설명서

☐ 사업목적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

☐ 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

☐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1.~12.
- 지원대상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행위 신고, 고발인
- 규 모 :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
- 추진방법
 - 신고포상금 : 자치구로 위반행위 신고 후 자치구 처분 시 자치구에서 시로 포상금 지급 신청
- 사업의 주요내용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